분리배출표시 가이드북

한국환경공단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목 차 | Contents

Ⅰ. 분리배출표시제도 안내 ····· 4

01.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 포장재 ····· 4
02. 분리배출표시 지정신청 ····· 5
03. 분리배출표시 기준 및 방법 ····· 6
04. 분리배출표시 적용예외 ····· 6

Ⅱ. 분리배출표시 도안 ····· 7

01. 도안 작도요령 ····· 7
02. 도안내부 표시문자, 외부 색채 및 표시재질 ····· 7
03. 재질별 분리배출표시 기본도안 ····· 8
04. 일괄표시 ····· 8

Ⅲ. 분리배출표시 관련 FAQ ····· 9

Ⅳ. 한국환경공단 연락처 ····· 11

『2011년 분리배출표시』 이렇게 바뀝니다!

〉〉 주요 개정사항

- 도안 내부 표시문자 중 철, 알미늄은 "캔류"로, 플라스틱류는 "페트", "플라스틱", "비닐류"로 표시
- 표시 도안의 색상은 식별이 용이하도록 전체와 대비되는 색채로 하여야 하며, 컬러로 인쇄하는 경우 품목별 분리수거용기와 동일한 색채를 사용하도록 권장(1도, 흑색 등 인쇄 가능)
- 분리배출표시 도안 아래의 "분리배출"문구를 삭제
- 분리배출표시 도안 위치를 상품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 상하좌우를 원칙으로 규정

구 분		기존 도안	개정 도안
합성수지	페 트	PET 분리배출	페트
	플라스틱	PET 분리배출 / LDPE 분리배출 / PP 분리배출 / PS 분리배출 / PVC 분리배출 / OTHER 분리배출	플라스틱 HDPE / 플라스틱 LDPE / 플라스틱 PP / 플라스틱 PS / 플라스틱 PVC / 플라스틱 OTHER
	비닐류		비닐류 HDPE / 비닐류 LDPE / 비닐류 PP / 비닐류 PS / 비닐류 PVC / 비닐류 OTHER
캔 류		철 분리배출 / 알미늄 분리배출	캔류 알미늄 / 캔류 철
종이팩		종이팩 분리배출	종이팩
유 리		유리 분리배출	유리
종 이 (의무대상 제외 품목)		종이 분리배출	종이 ※ 지정신청 · 승인 후 도안 사용가능

※ 환경부 고시 제2010-139호(2010.9.27)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 종전의 분리배출표시 제품 · 포장재에 관한 경과조치 : 시행일(2011.1.1)로부터 1년 6개월 유예

Ⅰ. 분리배출표시제도 안내

〉〉 분리배출표시제도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시행에 따라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의 분리배출을 쉽게 하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분리수거율을 높여 생산자들의 재활용 의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관련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분리배출표시제도)】

1.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 포장재 【관련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및 제18조】

포장재의 종류(A)	포장 대상품목(B)
– 종이팩 – 금속캔 – 유리병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제외) –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 음식료품류 – 농 · 수 · 축산물 – 세제류 –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 · 린스 – 의약품 및 의약외품 – 부탄가스제품 – 살충 · 살균제 – 의복류 – 위생용 종이제품 – 고무장갑 – 부동액 · 브레이크액 및 윤활유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에 한함)
– 합성수지재질 필름 · 시트형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 완충재	– 전기기기류 및 개인용컴퓨터 (모니터 및 자판 포함)
–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 · 쇼핑백 (폐기물 종량제 봉투 제외)	

※ **포장재의 종류(A) 및 포장 대상품목(B)**이 상기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포장재**의 경우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이 됩니다.

※ 그 밖의 종이, 금속, 유리, 플라스틱 재료를 사용하는 제품 · 포장재의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는 경우 분리배출표시 도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재활용 의무대상 업체가 규모미만으로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해당 포장재의 분리배출표시는 하여야 합니다.

2. 분리배출표시 지정신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기타 종이 · 금속 · 유리 · 플라스틱 재료를 사용한 제품 · 포장재의 제조업자 등이 자율적으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의 사용에 대한 지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지정승인 절차

신청서 제출 (업체 ➜ 공단)	⇨	접수 및 검토 (공단)	⇨	지정서 교부 (공단→업체) ※ 접수 후 10일내 교부

■ 지정신청서 작성

분리배출표시 사용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분리배출표시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재질검사 성적서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및 그 밖의 복합재질 제품 · 포장재에 한한다)
- 제품 · 포장재의 생산 · 판매량 및 폐기물의 회수체계에 관한 사항
- 분리배출표시 도안이 표시된 상표 등에 관한 사항

■ 지정신청서 접수

지정신청서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접수합니다.
→ 동일품목을 여러 지역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경우는 생산량 규모가 가장 큰 사업장 또는 본사 소재지를 주된 사업장으로 합니다.
- 지정신청서 제출시 제출된 자료, 견본 등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지정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작성한 후 정식 접수 전에 예비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정서 교부

한국환경공단은 지정신청서를 제출 받은 후 10일 이내에 지정승인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업체에 교부합니다.

3. 분리배출표시 기준 및 방법 【관련근거 :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제5조】

기 준	방 법
표시방법	– 인쇄, 각인 또는 라벨링
표시크기	– 가로, 세로 **최소 8mm 이상** (표시재질 문자제외)
표시색상	– 표시 대상 제품 · 포장재의 전체 색채에 대비되는 색채 (컬러로 인쇄하는 경우 품목별 분리수거용기와 동일한 색상사용 권장)
표시위치	– 제품 · 포장재의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 상하좌우 (단, 형태 · 구조상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 상하좌우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 밑면 또는 뚜껑 등에 표시가능)
기 타	– 다중포장재는 분리되는 각 부분품 또는 포장재마다 표시 (단, 분리되지 않는 다중포장재와 소재 · 구조상 개별포장재마다 분리배출표시가 어려운 경우 주요부분 한 곳에 일괄표시 가능) – 복합재질포장재는 구성부분의 표면적, 무게 등을 고려하여 주요재질부분에 주요 재질명을 분리배출표시 도안에 표시하고 여타의 재질명은 일괄표시 가능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재질에 표기되지 아니한 단일재질 및 2이상의 플라스틱 재질이 복합된 복합재질이거나 플라스틱에 여타의 재질이 도포 및 첩합된 것은 “OTHER”로 표시)

4. 분리배출표시 적용예외 【관련근거 :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제6조】

구 분	적용예외 대상
분리배출표시 적용예외	– 무표시 포장재 (포장재의 표면에 인쇄, 각인 또는 라벨 등 일체의 표시를 하지 않는 **필름 · 시트형 포장재**) – 포장재 표면적이 50제곱센티미터 미만 (필름 포장재의 경우 100제곱센티미터 미만)인 경우 – 내용물의 용량이 30밀리리터 또는 30그램 이하인 용기 – 소재 · 구조면에서 기술적으로 인쇄 · 각인 또는 라벨 부착 등의 방법으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 랩 필름 (두께가 20마이크로미터 미만인 랩 필름형 포장재)
분리배출표시 중 일괄 표시 적용예외	– 식품위생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성수지재질의 용기 · 포장재에 대한 재질표시를 한 경우 구성부분의 명칭과 재질명 (일괄표시 부분) 표시생략 가능

Ⅱ. 분리배출표시 도안

1. 도안 작도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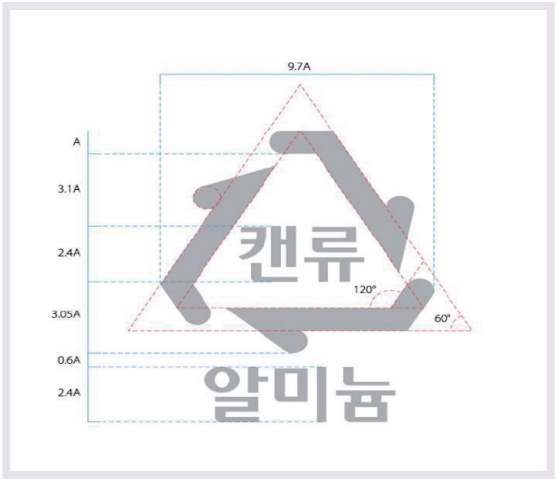

- 심벌마크 사용시 최소크기는 8mm이상 (표시재질 문자 제외)으로 한다.
- 심벌마크 각면의 연장선은 정삼각형이고, 연장선의 내각은 60도이며, 화살표 뒷부분의 꺾이는 부분의 내각은 120도로 한다.
- 심벌마크 라인의 폭이 A이면, 마크 내부 중앙부에 위치한 표시 문자의 높이는 2자 (페트, 캔류, 종이, 유리)인 경우에는 2.4A, 3자(비닐류, 종이팩)인 경우에는 2.35A, 4자(플라스틱)인 경우에는 2.2A로 한다.
- 심벌마크와 표시재질 문자의 간격은 0.6A로 한다.
- 심벌마크의 가로 폭은 9.7A로 한다.

2. 도안내부 표시문자, 외부 색채 및 표시재질

표시문자				도안예시
구 분	도안내부 표시문자	도안외부 색채	표시재질	
플라스틱	페 트	노랑색	-	
	플라스틱	파랑색	HDPE/LDPE/PP/PS/PVC/OTHER	
	비 닐 류	보라색		
금 속	캔 류	회 색	철/알미늄	
종 이	종 이 팩	녹 색	-	
	종 이	검정색	-	
유 리	유 리	주황색	-	

※ 도안내부 표시 문자의 “비닐류”는 “필름 · 시트형 포장재”를 의미합니다.

※ HDPE : High Density Polyethylene, LDPE : Low Density Polyethylene,
PP : Polypropylene, PS : Polystyrene, PVC : Polyvinyl Chloride

※ OTHER :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재질에 표기되지 않은 단일재질(페트 제외) 및 2이상의 플라스틱재질이 복합된 복합재질이거나 플라스틱에 여타의 재질(금속 등)이 도포 및 첩합된 것을 의미합니다.

3. 재질별 분리배출표시 기본도안

구 분		표시 도안	포장재 예시
합성수지	페 트	페트	
	플라스틱	플라스틱 HDPE / 플라스틱 LDPE / 플라스틱 PP / 플라스틱 PS / 플라스틱 PVC / 플라스틱 OTHER	
	비닐류	비닐류 HDPE / 비닐류 LDPE / 비닐류 PP / 비닐류 PS / 비닐류 PVC / 비닐류 OTHER	
캔 류		캔류 알미늄 / 캔류 철	
종이팩		종이팩	
유 리		유리	
종 이		종이 ※ 지정신청 • 승인 후 도안 사용가능	

※ 상기 도안은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www.keco.or.kr)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사업] ➜ [자원순환] ➜ [제도운영지원] ➜ [분리배출표시제도] ➜ [분리배출표시 도안]

※ 합성수지재질 중 용기류인 경우는 플라스틱으로, 필름 · 시트형인 경우 비닐류로 구분됩니다.

4. 일괄표시

다중포장재 등의 주요 구성부분 한 곳에 분리배출표시를 하고 그 표시 상하 · 좌우 인접한 곳에 다른 구성부분의 명칭과 재질명을 한꺼번에 기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 분	구 성	도 안	
예시 1	주요부분 : 페트 뚜껑 : HDPE 라벨 : PP	페트 뚜껑:HDPE 라벨:PP	페트 뚜껑:HDPE/라벨:PP
예시 2	주요부분 : PP(용기형) 뚜껑 : HDPE 라벨 : 페트	플라스틱 PP 뚜껑:HDPE 라벨:페트	플라스틱 PP 뚜껑:HDPE/라벨:페트

Ⅲ. 분리배출표시 관련 FAQ

1 재질별 도안 외부색채 관련규정은 강제사항인지?

외부색채 관련 규정은 권장사항이며 전체색상과 대비되는 색상을 사용하여 식별이 용이하게 하는 것이 기본원칙임 (1도 사용 가능)

2 플라스틱의 분리배출표시를 하고자 하나 도안내부에 “플라스틱”이라는 문구를 삽입하면 글자가 뭉개져 식별이 어려운 경우 “프라스틱”또는 “PLASTIC”으로 표기해도 되는지?

분리배출표시 기본도안 및 표기방법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으로 도안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함 (단, 식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 도안색채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함)
※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서 해당 도안파일을 내려받아 정비례로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

3 분리배출표시 개정사항 적용시 출고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제조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분리배출표시 개정사항 적용시 국내 생산품의 경우 “제조일”을 기준으로, 수입품의 경우 “수입일”을 기준으로 적용함
예를 들어 2010년에 제조된 제품이 2012년 12월에 출고되는 경우 제조일이 개정안 시행전이므로 개정 도안 미사용에 따른 제재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4 용기형태의 페트재질 포장재의 분리배출표시 방법은?

포장재의 형태(플라스틱, 비닐류)에 따른 구분 없이 삼각형 도안 안에 “페트”로 기재

5 외국의 분리배출표시가 각인되어 수입되는 제품 포장재의 경우 우리나라의 분리배출표시와 동시에 사용가능한지?

가급적 우리나라 분리배출표시만 나타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포장재에 각인되어 수입되는 제품과 같이 정정이 불가피한 경우 외국의 분리배출표시와 우리나라 분리배출표시 동시 사용 가능

6 분리배출표시 지침 개정으로 지정승인을 기 득한 제품·포장재도 지정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지정승인을 받은 제품 · 포장재의 상표나 재질 등이 변경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재승인 절차는 불필요함

7 종이에 합성수지를 라미네이팅(첩합) 한 경우 분리배출표시 방법은?

일반종이, 단면코팅, 양면코팅, 단면 첩합된 종이의 경우 "종이"로 분류되어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이 아니나 단면 첩합의 경우에도 주요 구성부분이 합성수지인 경우 합성수지로 분류되어 비닐류(OTHER)의 분리배출표시를 적용함

8 발포합성수지 EPS, EPP, EPE의 분리배출표시 세부표기 사항은?

EPS는 PS로, EPP는 PP로, EPE는 PE로 표시함

※ 참고

재질계열 (표시 세부재질)	재질 계열별 예시
PP	OPP, CPP, A-PP, BOPP, IPP, I-PP, S-PP, EPP
PS	EPS, PSP, GPPS, HIPS, MIPS, OPS
PET	A-PET, B-PET, C-PET, D-PET, E-PET, F-PET, PETG
PVC	PVC, PVDC, PVCA

9 종이박스의 내용물을 보여주기 위한 투명 비닐창의 경우 분리배출표시를 해야 하는지?

주요재질이 종이인 박스인 경우 투명 비닐창에 대해서는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않아도 됨

10 음식료품류 등에 포함된 스푼, 시리얼볼 등도 분리배출표시를 해야 하는지?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은 음식료품류 등의 포장재로 사용되는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 포장재로 스푼, 시리얼볼 등은 포장재로 보기 어려우므로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Ⅳ. 한국환경공단 연락처

지 사	주 소	전화ⓣ/팩스ⓕ	관할구역
수도권지역본부 제도운영팀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동 666-3번지 가운드림프라자 3층	ⓣ(031)590-0654,0656 ⓕ(031)590-0629	과천, 광주, 군포, 성남, 수원, 안산, 안성, 안양, 오산, 용인, 의왕, 이천, 평택, 하남, 화성, 여주, 양평
	분리배출표시제도 담당자 Tel.031-590-0654		
영남지역본부 제도운영팀	경남 김해시 화목동 313-1번지	ⓣ(055)320-0331~4 ⓕ(055)320-0344	부산, 울산, 경남
	분리배출표시제도 담당자 Tel.055-320-0331		
충청지역본부 제도운영팀	충남 연기군 남면 월산리 677 월산지방산업단지	ⓣ(041)860-7721,7723 ⓕ(041)863-7724	대전, 충남
	분리배출표시제도 담당자 Tel.041-860-7799		
호남지역본부 제도운영팀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6-2 3층	ⓣ(062)949-0745,0747 ⓕ(062)443-0780	광주, 전남
	분리배출표시제도 담당자 Tel.062-949-0745		
서울지사 제도운영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73 삼창프라자 2층	ⓣ(02)3153-0531~7 ⓕ(02)6008-3023 3273-2979~81	서울, 인천, 김포, 고양, 광명, 구리, 남양주, 동두천, 부천, 시흥, 양주, 의정부, 파주, 포천, 가평, 연천
	분리배출표시제도 담당자 Tel.02-3153-0536		
강원지사 제도운영팀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513번지 한국교직원공제회관 8층	ⓣ(033)240-9542~4 ⓕ(0303)3442-6699	강원
	분리배출표시제도 담당자 Tel.033-240-9543		
경북지사 제도운영팀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천동 900-1	ⓣ(053)580-7541~3 ⓕ(053)580-7575	대구, 경북
	분리배출표시제도 담당자 Tel.053-580-7543		
전북지사 제도운영팀	전북 정읍시 하북동 848 정읍 제2산업단지 16블럭	ⓣ(063)530-0821,0825 ⓕ(063)532-6050	전북
	분리배출표시제도 담당자 Tel.063-530-0821		
충북지사 제도운영팀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743 KT충북본부 6층	ⓣ(043)219-6441,6444 ⓕ(043)214-0763	충북
	분리배출표시제도 담당자 Tel.043-219-6441		
제주지사	제주시 일도2동 357-15 대동빌딩 2층	ⓣ(064)722-6542 ⓕ(064)721-5564	제주
	분리배출표시제도 담당자 Tel.064-722-6542		

※ 수도권지역본부 및 서울지사의 관할구역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책자는 분리배출표시 안내를 위해 한국환경공단에서 제작한 책자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또는 업체 소재 공단 관할 본부 및 지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